

지정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주사무소 소재지:
4. 시험연구시설 소재지:
5. 지정분야:
6. 유효기간:
7. 최초 지정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